#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5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이원택・윤준병・한병도

박희승 · 신영대 · 이춘석

조 국・정동영・김윤덕

안호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올해 1월 공식 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일부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한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 지정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 조문 일부를 보완하여,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 통, 연구개발 등 산업을 집적화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 분야 지역특화 전략사업에 대한 권한 이양 등 특례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8조)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발전목표 및 국가적 거점화 전략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계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협의 대상을 명확화하고자 함.

#### 나.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안 제19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한 개발(실행) 계획은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용지확보 및 토지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며, 지구 지정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를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협의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안 제41조의2 신설)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체적으로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장소 또는 조립 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 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제 호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과 협의"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생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편제3장제1절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기간 내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① 제4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4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혅 했 개 정 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8조(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제18조(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 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 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관계 ---- 농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죽산식품부장관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①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 생명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생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 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제41조의2(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
	리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
	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
	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
	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
	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
	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
	<u>다.</u>
	③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
	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목적

현 행	개 정 안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
	<u>야 한다.</u>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
	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
	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
	를 받은 자는 기간 내 전북자
	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권
	한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1조(과태료) <u>&lt;신 설&gt;</u>	제131조(과태료) ① 제41조의2제4
	<u>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 허가</u>
	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u>&lt;신 설&gt;</u>	② 제4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현 행	개 정 안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
	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u>부과한다.</u>
① (생 략)	③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	<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가 부과·징수한다.	